

유켄 영국유학 무료수속신청 계약서

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 수속을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(이하 '고객'이라 합니다)와 유켄영국유학(이하 '유학원'이라 합니다)이 뒷면에 기재한 금액 등으로 유학 수속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제1조(유학원의 의무)

- ① 유학원은 고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·처리함에 있어서 고객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 - 지원 서류 확인
 - 지원서 작성 및 제출
 - 지원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
 - 외국어시험점수 통보(Test Score Report)
 - 인터뷰 예약(필요 시)
 - 입학허가 여부 확인
 - 학비 및 예약금(Deposit) 송금 안내
 - 비자 세미나(신체검사 안내)
 - 기숙사 신청 안내
 - 공항마중 신청 안내
 - 출국 세미나
- ② 유학원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 수속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,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- ③ 유학원은 고객과의 상담 및 고객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 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④ 유학원은 고객에게 유학 수속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·설명하고,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- ⑤ 유학원은 학비·기숙사비 및 제반 수수료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학교에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.

제2조(고객의 의무)

- ① 고객은 유학원이 유학 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유학 수속에 필요한 지원학교 지원비용, 등록비용, 비자신청비용 등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
- ② 고객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 수속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고객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
- ③ 고객은 지원학교로부터 받은 입학허가서(Offer)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④ 고객은 지원학교 기숙사 신청 및 계약을 직접 진행하며, 기숙사 유형·위치·계약등의 세부조건을 숙지해야 합니다.

제3조(유학원의 면책)

- ①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다.

-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
 - 고객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
 -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
- ② 유학원은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학 수속 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(계약의 해제)

- ① 유학원은 고객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객의 이종 혹은 다중 유학원과의 계약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② 고객은 유학원이 제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(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)

- ① 고객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무료 수속 계약이기 때문에 유학수속대행료 반환 및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② 유학원은 계약의 중도 해지 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고객으로부터 유학 수속과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폐기해야 합니다.

제6조(대행업무의 종료)

- ① 출국준비가 완료되면 유학원의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.

제7조(계약의 변경 등)

- ①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유학원과 고객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.
-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.
-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.

특약사항 및 기타 추가 사항

- 유학원과 고객은 학교 지원에 필요한 온라인 지원 포털 로그인 정보를 상호 공유합니다.
- 본 계약은 최초 계약일에 희망한 입학 년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- 이중 혹은 다중 유학원과의 계약을 금지합니다.
- 필요 시 영문번역, 영문교정은 단어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
- Pre-sessional(프리세셔널) 과정에 지원해야 하는 경우, 반드시 Academic IELTS for UKVI 성적이 필요합니다.
- 석사학위 과정 지원 시, 3개교 지원이 기본이며, 추가 지원 시 1개교당 10만원(부가세 별도)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
- 동반인 비자 신청 대행 시, 동반인 1명당 10만원(부가세 별도)의 추가 비자대행료가 발생합니다.
- 허위 사실 기재 및 중요 정보 고의 누락으로 비자 발급 거절을 당한 경우, 유학원에 책임이 없습니다.

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유학원과 고객이 각 1통씩 보관합니다.

이에 대해 무료 유학 수속을 계약합니다.

202 년 월 일

유학원: (주) 유켄영국유학 (인)

고객: (인)